

정 관

1944년 8 월 30 일 제정

2011년 3월 16일 제80차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530호)

학교법인 삼육학원

學 教 法 人 三 育 學 園 定 款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철일안식일에수재림교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삼육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삼육대학교 부속유치원
2. 서울삼육초등학교
3. 태강삼육초등학교
4. 광주삼육초등학교
5. 대구삼육초등학교
6. 서해삼육초등학교
7. 춘천삼육초등학교
8. 동해삼육초등학교
9. 원주삼육초등학교
10. 대전삼육초등학교
11. 부산삼육초등학교
12. 서울삼육학교
13. 한국삼육학교
14. 호남삼육학교
15. 영남삼육학교
16. 동해삼육중학교
17. 대전삼육중학교
18. 원주삼육중학교
19. 서해삼육중학교
20. 서울삼육고등학교
21. 한국삼육고등학교
22. 원주삼육고등학교
23. 호남삼육고등학교
24. 영남삼육고등학교
25. 동해삼육고등학교
26. 서해삼육고등학교
27. 삼육간호전문대학(교명은 “삼육보건대학”이라 한다)
28. 삼육대학교

제 4 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66번지에 둔다.

제 5 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 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7.12.26, 개정 2008.2.16)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7.12.26)

③보통재산은 제 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제 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익과 재단법인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립교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 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9조의2 (예산·결산의 공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결산은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제 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조 (세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2007.1.11)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1986.9.25)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 15인 (이사장 1인 포함, 개정 2007.1.11)

2. 감 사 - 2인

제 23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 5 년(개정 2007.1.11)

2. 감 사 - 3 년(개정 2007.1.11)

② 삭 제(2010.02.24)

③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항신설 2007.1.11)

- 제 24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단서신설 2009.2.16)
-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 24조의2(개방이사의 자격)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우리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이어야 한다.(조신설 2007.1.11)
- 제 24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 수는 4인으로 한다.(조신설 2007.1.11, 개정 2009.2.16)
- 제 24조4(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삼육교육협의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 ②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삼육교육협의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제24조의2에 의거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7.12.26)
- ③ 삭 제(2007.12.26)
- 제 24조의5(삼육교육협의회) ①삼육교육협의회는 삼육대학교 대학평의회에 둔다.(2007.12.26. 개정)
- ②삼육교육협의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 ③삼육교육협의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그 밖에 삼육교육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삼육교육협의회규정으로 할 수 있다.
- 제 25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1.11)
-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 ⑥감사 중 1인은 삼육교육협의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항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 ⑦제6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4를 준용한다.(항신설 2007.1.11)
-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항신설 2007.1.11)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 ⑨이 법인의 임원은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항신설 2007.1.11)
- 제 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회 호선으로 취임한다.
-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삭제 2005.11.3)

- 제 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 28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2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 30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항신설 2007.1.11, 개정 2011.3.16)

제 2 절 이 사 회

- 제 31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 32조 (이사회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2007.1.11)
 ②이사회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1.11)
- 제 33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 제 34조 (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조신설 2007.1.11, 개정 2007.12.26)

제 35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9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 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곡가공업
2. 식품, 음료제조 및 가공업
3. 식품 음료 판매업
4. 농업(과수, 작물 생산 등)
5. 부동산 임대업
6. 석유류 판매업
7. 사료 제조업
8.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
9. 그외 기타 식품 제조업

제 37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삼육식품과 삼육주유소를 경영한다.

제 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①삼육식품의 제 1 공장 및 사무소는 충남 천안군 직산면 판정리 320번지에, 제 2 공장 및 사무소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680번지에 둔다.

②삼육주유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63번지에 둔다.

제 39조 (관리인) ①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 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2.16)

제 41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재단법인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이 경영하는 교육기관에게 귀속된다.(개정 2009.2.16)

제 42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9.2.16)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면

제 43조 (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대학 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의 그 임기(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의 임기를 합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11.3.16)

②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2002년 1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의 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는 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 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보수 : 대학의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 및 수당 등을 합해 직급에 따라 지급한다.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과 연구실 배정, 근무지 등 소속학과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약정 :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에 따른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④2002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관할청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임용지침”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 조건을 정하여 정관 제43조 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할 수 있다.(개정 2009.2.16)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6년

3. 조교수: 4년

4. 전임강사: 2년

5. 조교 1년

⑤제 1항 내지 제 4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한다.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대학원장의 보직은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 한다.(개정 2009.03.27)

⑦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대학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교원직에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용계약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항신설 2010.06.16)

제 43조의2 (기간제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다.

②초·중등학교의 정년퇴직자를 교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임용할 수 있으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④기간제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하여 임면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 43조의3(산학겸임교원) ①산학겸임교사등의 임명은 관련업무(종교단체 포함)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당학교의 장이 위촉 임명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우한다.

제 43조의4(중등교원의 신규채용) ①중등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의거 교원 임면권자가 공개 전형 한다.

②교원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의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제52조제1항의 4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조신설 2007.1.11, 개정 2011.3.16)

③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을 준용한다.(항신설 2011.3.16)

④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항신설 2011.3.16)

제 43조의5 (전형결과 공개) 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조신설 2007.1.11)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 44조 (휴직 및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사·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초등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09.2.16)

9.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요청할 때(호신설 2008.4.14)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호신설 2011.3.16)

제 44조의 2 (겸직 및 겸직의 사유) 교원이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 산업체(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겸직을 명할 수 있다.(조신설 2008.4.14)

제 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 중 2회로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8. 제44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호신설 2008.4.14)
- 9. 제44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호신설 2011.3.16)

제 45조의 2 (겸직의 기간) 제44조의 2의 사유로 겸직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조신설 2008.4.14)

제 46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46조의 2 (겸직 교원의 신분) 겸직 중인 교원은 겸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조신설 2008.04.14)

제 47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 2011.3.16)

②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3.16)

제 48조 (직위 해제 및 해임) ①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3.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리에 위배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 49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50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0조의 2 (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50조의 3 (정년) ①교원(임기가 있는 교원 및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대학의 교원(임기가 있는 교원 및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임기는 65세로 한다.

②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 50조의 4 (명예퇴직) ①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퇴직일전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②제 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지급규정에 준 한다.

제 50조의 5 (특별승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50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 할 때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 3 관 교 원 인 사 위 원 회

제 51조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11)

제 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1.11)

1.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대학원장을 보 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중등학교 교원의 경우)

5.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6. 초·중등학교의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 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개정 2007.1.11, 2009.2.16)

1. 10학급 이하 학교 - 3인

2. 20학급 이하 학교 - 5인

3. 21학급 이상 학교 - 7인

②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 54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5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6조 (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 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5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 원 징 계 위 원 회

제 59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교원 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0조 (삭제, 90.12.31)

제 61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2조 (징계위원의 기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3조 (제척사유)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63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 대상자는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63조의 3 (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65조 (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6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격,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66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11.3.16)

제 67조 (교원 징계위원의 간사 등) ①교원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제 68조 (운영세칙) 교원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절 제 69조 내지 제82조 (삭제 1991.9.20)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 83조 (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및 고용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84조 (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사무직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는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대우사무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⑥일반직 8급 이하 및 기능직 8급 이하의 중·고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시킬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 85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86조 (보수) 일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 87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87조의2 (정년) ①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공무원 정년을 준용한다. 다만, 고용직은 55세로 한다.(개정 2009.2.16)

②정년이 된 자라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1년씩 재채용 할 수 있으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기타 사항은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칙을 준용한다.

제 87조의3 (명예퇴직) ①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조신설 2009.2.16)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조신설 2009.2.16)

제 87조의4 (특별승진)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8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명예 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조신설 2009.2.16)

제 88조 (징계 및 재심 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 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 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89조 (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2급으로 보 한다.(개정, 2011.3.1)

②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재무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 한다.(개정 2011.3.1)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

제 90조 (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항신설 2009.3.19)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총장의 유고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항신설 2009.3.19)

제 91조 (대학원장) ①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에 원장을 둔다.

②각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 한다.

③각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 92조 (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지원처, 기획처, 사무처 및 대외협력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산학협력단과 사회봉사단을 둔다.(개정 2009.3.19)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2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09.3.19, 2011.3.1)

③교무처에 교무과, 학적과 및 입학관리본부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이나 5급으로 보 한다.(개정 2009.3.19, 2011.3.1)

④학생지원처에 학생지원과, 여학생과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이나 5급으로 겸보 한다.(개정 2009.3.19, 2011.3.1)

⑤사무처는 재무실, 총무과 및 관리과, 예비군대대를 두며, 재무실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4급이나 5급으로 보 한다.(개정 2009.3.19, 2011.3.1)

⑥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과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이나 5급으로 보 한다.(개정 2009.3.19, 2011.3.1)

⑦교목처에 교목과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이나 5급으로 겸보한다.(개정

2009.3.19, 2011.3.1)

⑧기획처에 기획, 예산, 평가, 홍보팀을 두며,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이나 5급으로 보한다.(개정 2009.3.19, 2011.3.1)

⑨산학협력단에 연구진흥실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이나 5급으로 보한다.(개정 2009.3.19, 2011.3.1)

⑩각처 및 산학협력단에는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개정 2009.3.19, 2011.3.1)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3.19)

제 93조 (대학원의 하부조직) ①대학원에 교학과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으로 보한다.(개정 2011.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94조 (부속기관 및 부속연구소)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속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부속기관에는 대학교회, 국제문화교육원, 박물관, 사회교육원, 생활교육관, 서비스센터, 예언의신연구원, 정보전산원, 중앙도서관 및 출판부를 둔다.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09.3.19)

③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95조 (도서관) ①도서관에 수서과와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4급으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 한다.(개정 2011.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95조 2 (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2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개정 2011.3.1)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 95조의 3 (학교기업) ①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대학교 학교기업 설치 운영한다.

②학교기업의 대표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학교기업은 대학교 산하의 별도 사업자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학교기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T관련 사업(H/W, S/W,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다.

⑤학교기업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조선실 2009.5.21)

제 3 절 대 학

제 96조 (총장 등) ①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개정 2009.2.16)

제 97조 (하부조직) ① 대학에 교무처, 학생지원처 및 산학협력처, 사무처, 기획처를 둔다.(개정 2010.5.20)

②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처장, 기획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보하고 사무처장은 2급, 3급,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 한다.(개정 2010.5.20, 2011.3.1)

③산학협력처에 산학협력과, 실습지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및 5급으로 보 한다.(개정 2011.3.1)

④교무처에 교무과, 학적과 및 입학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및 5급으로 보 한다.(개정 2011.3.1)

⑤학생지원처에 복지지원과와 여학생과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및 5급으로 보한다.(개정 2011.3.1)

⑥사무처에 재무과, 총무과 및 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개정 2011.3.1)

⑦기획조정실에 기획예산과 홍보과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및 5급으로 보 한다.(개정 2011.3.1)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98조 (부속시설) ①대학에는 필요한 부속 시설을 둘 수 있다.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부속시설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99조 (도서관) ①도서관에 수서과와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4급으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 한다.(개정 2011.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99조 2 (산학협력단) ①대학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개정 2010.5.20)

②산학협력단장은 2급 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개정 2010.5.20, 2011.3.1)

③산학협력단장은 대학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99조 3(학교기업) ①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삼육보건대학 학교기업을 설치 운영한다.

②학교기업은 대학 산하의 별도 사업자로 설립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학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사업종목을 운영할 수 있다.(조신설 2010.5.20)

제 4 절 고 등 학 교

제100조 (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1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6급 또는 7급으로 보할 수 있고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3.1)

제 5 절 중 학 교

제102조 (교장 등)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3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 또는 7급으로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3.1)

제 6 절 초 등 학 교

제104조 (교장 등) ①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5조 (하부조직) 초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6급, 7급 또는 8급으로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3.1)

제 7 절 유 치 원

제106조 (원장등) ①유치원에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유치원에 사무과를 두며 과장은 8급 또는 9급을 보 할 수 있고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3.1)

제 8 절 각 종 학 교

제107조 (교장 등 하부조직) 각급 학교에 준 하는 각종 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제90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상급학교의 장이 통합운영학교의 장을 겸직한다.

제 9 절 정 원

제108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대학교와 대학에는 고용직으로 20인내에서 각각 해당학교장이 고용할 수 있다.(개정 2009.2.16)

제 8 장 대학평의위원회(장신설, 2007.1.11)

제 1 절 대학평의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

제109조(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목적) 대학 이상의 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0조(평의위원회의 구성) ①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2.16)

1. 교원 5인
2. 직원 3인
3. 학생 1인
4. 동문 1인
5.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1인

②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1조(평의원의 위촉)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 간 협의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112조(평의위원회 의장 등)①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13조(평의원의 임기)①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제110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최초 위원회 구성시의 위원임기는 해당 학년말을 그 임기로 한다.

제 2 절 평의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114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7.12.26, 2009.2.16)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삼육교육협의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5조(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 1 절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목적 및 구성

제116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삼육교육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7조 (위원의 선출)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위원정수의 2 배수 내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1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19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 중인자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20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는 아니된다.

제121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12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3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 학교의 행정 실장이 되며,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2 절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제12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07.1.11)

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6.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삼육교육협의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6)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학교운영에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④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⑤ 동조제1항제7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학평의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제125조 (시행 의무 등)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 항

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의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 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①항의 경우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제126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7조 (회의 및 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 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8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29조 (건의사항 처리) ①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30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1조 (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2조 (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3조 (회의록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4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35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136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37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에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삼육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38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에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40조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1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2조 (분쟁조정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3조 (회의개최 등) ①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 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4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45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6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47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8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보 칙

제149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대학학보 및 일간신문 또는 경제신문에 공고한다.

제15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51조 (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임 기	생 년 월 일	주 소
이사장	원 룡 상	4 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6번지
이 사	마 일 서	4 년		"
"	박 창 욱	4 년	1906. 7. 20	" 89번지
"	이 여 식	4 년	1903.12. 3	" 23번지
"	이 재 명	2 년	1912. 9. 21	" 66번지
"	김 명 길	2 년	1897.12. 12	" 33의 2
"	신 태 약	2 년		서울 중구 무교동 89번지

부 칙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한다.(결격사유 해당자)

③(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 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2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을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⑤(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처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⑥(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⑦(일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 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 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 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정관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 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91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 및 일반직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해 임용되어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의 정년규정은 교육공무원 및 국가(지방)공무원법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회의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 ③(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을 200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을 200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을 200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을 200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을 2003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을 2004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을 2004년 0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을 2004년 0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을 200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삼육의명대학에 대한 경과조치) 삼육의명대학은 통합과 동시에 폐교하되 2008년 2월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삼육의명 대학 폐교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을 적용하고,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삼육대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 ③(삼육의명대학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삼육의명대학의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삼육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원임용 대한 규정은 2007년 3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분부터 적용 시행한다.
- ②(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에 있는 임원은 임기만료까지 재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대학평의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때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임원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 ③(임원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2항의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8항의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직제와 별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별표 1>

정원 총괄표

구 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계
법 인 정 원	일반직	1		1	1			1			4
	기능직									1	1
	계	1		1	1			1		1	5
학 교 정 원	일반직	2	2	6	8	59	38	29	11		155
	기술직			2	2	22	13	4	1		44
	기능직					6	21	21	23	72	143
	계	2	2	8	10	87	72	54	35	72	342
합 계		3	2	9	11	87	72	55	35	73	347

<별표 2>

학교직원정원표

학교명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합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술직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기능직계		
삼육대학교부속유치원								1	1													1	1	2
광주삼육초등학교					1		1		2												1	2	3	5
대구삼육초등학교						1	1		2													4	4	6
대전삼육초등학교					1		1		2												1	2	3	5
동해삼육초등학교							1		1													4	4	5
부산삼육초등학교								1	1													4	4	5
서울삼육초등학교					1		1	1	3												1	3	4	7
서해삼육초등학교						1	1		2													4	4	6
원주삼육초등학교					1		1		2												1	2	3	5
춘천삼육초등학교						1	1		2													4	4	6
태강삼육초등학교					1		1	1	3												1	3	4	7
서울삼육학교					1		1		2												2	2	4	6
영남삼육학교							1		1													3	3	4
한국삼육학교					1	1			2												1	3	4	6
호남삼육학교					1		1		2												1	1	2	4
대전삼육중학교						1			1													3	3	4
동해삼육중학교						1			1													3	3	4
서해삼육중학교						1	1		2												1	2	3	5
원주삼육중학교						1		1	2													3	3	5
동해삼육고등학교					1				2													3	3	5
서울삼육고등학교					1		1	1	3												2	2	4	7
서해삼육고등학교					1		2		3												1	2	3	6
영남삼육고등학교					1				2													3	3	5
원주삼육고등학교					1		1	1	3												1	3	4	7
한국삼육고등학교					1	1			3												2	2	4	7
호남삼육고등학교					1				2												1	1	2	4
삼육보건대학		1	1	2	7	10	4	1	26			2	2	1		5		2	3	1			6	37
삼육대학교	2	1	5	6	37	18	7	1	77	2	2	20	11	3	1	39	6	19	18	5	3	51	167	
합계	2	2	6	8	59	38	29	11	155	2	2	22	13	4	1	44	6	21	21	23	72	143	342	